

宗事

運營委員會會議 開催

지난 1월 29日 午前11時 2001年度 大宗會 會務報告와 會計決算審議 2002年度 歲入歲出豫算案審議 飲水齋 重建事業 決算報告 大宗會機構를 活性化시키기 위하여 會則一部改正 2002年度 當面한 營繕事業에 對한 協議等 여러 가지 案件을 審議하여 理事會에 上程하여 議決을 거쳐 總會의 承認을 받고서 運營委員會會議을 開催하였다. 會議에 앞서 事務局長의 成員報告가 있는 다음 會長이 開會를 宣言하고 國民儀禮와 아울러 先祖님의 英靈이 是安하시기를 비는 默念을 올리고 會長님의 간단한 人事를 마친 다음 會順에 따라 事務局長이 宗務報告를 하였다. 다음으로 2001年度 會計決算과 2002年度 歲入歲出豫算案을 審議 原案대로 通過하고 會則一部 改正案 第三章 任員 第七條 任員 本會에 다음의 任員을 둔다 4項 副會長 3人을 改正 20人 以內로 하고 派宗會長 15名을 副會長으로 한다. 그외 5名은 會長이 必要에 따라 推薦한다. 5項 理事 55名으로 하고 50名은 派別 分布比例에 依한 配分(派會長包含)人員으로 하고 5名은 聯合地域宗親會 會長을 會長이 推薦하여 委囑한다(改正)70名 以內로 하고 50名은(各派 會長包含) 派別 配定人員으로 하고 그 外는 100名 以上 會員으로 構成된

聯合地域宗親會會長을 會長이 理事로 委囑한다. 6項 運營委員 15名은 附則 第十章 財政 第39條(會費納付) 3項을 新設 任員은 다음과 같이 定한 會費를 本會에 納付하여야 한다. 會長 年 100萬원 副會長 年 20萬원 理事 年 10萬원 이와 같이 會則改正을 議決하고 다음으로 營繕事業 1. 會館補修 2. 忠烈公齋室 管理舍 기와補修 3. 齋室電氣 승압공사, 飲水齋重建記念碑謹堅等を 審議通過하였다. 다음은 任員의 任期가 滿了되어 新任會長 推戴와 監事選出에 들어가 절차상 臨時議長을 選出하여 議長을 맡아 運營委員들이 各者 有名人事를 推薦하여 그 가운데서 有能한 人분을 推戴함이나 이날은 相祚會長께서 身上發言을 한 다음 앞으로 大宗會發展에 寄與할 수 있는 人분을 推薦하면 어떻겠느냐고 意見을 말하니 全員이 찬성하여 璣會賢宗을 推薦하여 滿場一致 決議하고 다음으로 監事選出에는 榮煥監事는 留任하고 洙栢監事의 後任으로 提學公派 永默賢宗을 推薦하여 滿場一致로 決議한 다음 會長의 閉會辭로 會議을 모두 마쳤다.

2001年度 會計決算理事會議開催

지난 2月23日 午前11時 2001年度 大宗會 會計決算理事會를 開催하였다. 事務局長의 成員報告에 이어 開會宣言을 하고 式順에 따라 國民儀禮와 先祖英靈에 對한 默念을 올린 다음 會長님의 간단한 人事를 마치고 案件 審議에 들어가기에 앞서 監查報告를 다음과 같이 하였다. 1. 수입과 지출이 예산안 범위 안에서 적절히 지출되었으며 2. 예산안 중 예비비의 책정이 과다하여(총액대비 약 15%) 능동 토지 매입을 예비비에서 사용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나 이는 추가예산을 다시 승인받아 집행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3. 능동 음수재 토지 매입은 적절한 시기에 명분과 실리를 살린 절묘한 집행이었으나 이의 지출이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형식이어서 무리한 것이었다고 사료됨 4. 퇴직급여 총당금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추후 퇴직금 지급시 재정의 어려움이 있을수도 있으니 퇴직급여 총당금의 설정을 하고 소급하여 총당(몇년에 걸쳐서)하는 것이 좋을 듯함 5. 보통예금 통장이 경리직원의 도장으로 개설되어 있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니 시정되어야 할 것임 6. 회관 임대료중 2000년도 미수금이 현존하나 수차 독촉한 노력은 인정되지만 사전에 미수금이 과다히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여야 할 것이며 이사회의 승인으로 결손처분 하더라도 추후 끝까지 주적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추징하도록 하여 종재의 귀중함을 상기시켜야 할 것임. 7. 신년도 예산안중 회관 임대료는 주변상가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조정함이 타당함. 8. 신년 예산안중 영선비(회관수리비) 7,500만원은 회관의 효율성과 유지보수의 적정성을 좀더 충실히 검토할 사항임 9. 회계장부와 현금(예금) 실제상황이 맞지 않아 감사의 어려움이 많으나 장부와 일치되도록 할 것을 주문함. 10. 임대업종중 3층의 봉제공장은 화재의 위험성이 많아 화재보험료의 과대한 지급은 물론 방제시설의 미비로 인한 화재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이에 대한 집행부의 조치가 필요함. 11. 토지와 건물 중도 등 부동산에 대하여 매년 등기부등본

을 발부받아 확인하여 권리상 이상유무를 확인함이 타당함 등을 榮煥監事가 監查結果를 報告하고 飲水齋重建事業決算監查는 洙栢監事가 報告하였는데 많은 어려움에도 무난히 재사중건이 완료된 것은 추진위원 및 실무자들의 노고가 지대하나 총 예산승인 1억8천을 초과하여 1천7백만원이 추가되어 공사를 마무리하여 마감히 공사가 되었지만 추가 공사는 당연히 추가예산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함이 타당함으로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함. 이와 같이 정밀한 감사보고를 마치고 飲水齋重建決算報告와 2001年度 會計決算 2002年度 豫算案은 原案대로 可決하고 다음으로 會則一部 改正 審議에서 運營委員會會議에서 審議議決한 案대로 上程하여 審議한 바 會則 第三章 任員 第七條(任員) 本會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4項 副會長 3人을 改正案 20人 以內로 하고 派宗會長 15名을 副會長으로 한다. 그외 5名은 會長이 必要에 따라 推薦한다. 6項 運營委員會 15名은 附則 第十章 財政 第39條(會費納付) 3項新設 任員은 다음 定한 會費를 納付하여야 한다. 會長 年 100萬원 副會長 年 20萬원 理事 年 10萬원 이에 대하여는 임원회비를 설정한 뜻은 알겠으나 만일 이대로 한다면 앞으로 참여할 임원이 반도 안될 것임으로 이는 종전대로 함이 옳다는 意見이 대다수 찬동하여 第十章 第39條 3項 新設은 유보기로 결의하였다. 다음으로 新任會長 推戴에 들어가 지난 1月 29日 運營委員會에서 仁川市長과 山林廳長을 歷任하고 서울市 議會 議長을 지낸 翼元公派 璣會賢宗이 推戴되었음을 報告하여 큰 拍手로 환영하고 다음으로 會館補修 安東齋室 管理舍 기와補修 電氣 승압工事等에 對하여는 이미 豫算案에 반영되어 審議 議決되었으므로 3人 以上의 見積을 받아 會長團 會議에서 決定하도록 會長團에 委任기로 議決하였다. 끝으로 閉會를 宣言하고 점심식사를 들며 오가는 정, 덕담으로 會議을 마치고 散會하였다.

會長 就任告由祭行事

지난 3月 20日 임원 10여명과 동행하여 忠烈公墓所에서 會長 就任告由祭를 事務局長 命會의 執禮로 嚴肅히 奉行하였다. 告由祝文은 別記와 같다. 告由祭를 마친 다음 影幀閣에 들러 參拜하고 檜谷洞 竹州朴氏 할머니 壇所 參拜에 가는 길에 神道碑閣에 들러 參拜하고 會長께서 神道碑閣 앞 道路邊에 里程標를 세울 것을 指示한 다음 檜谷洞 할머니 壇所를 參拜한 후 5시 서울행 열차시간을 대기위해 서둘러 출발하여 상경하였다.

會長就任告由祝文

維 歲次壬午三月辛亥朔初八日戊午二十四代孫璣會敢昭告于 顯二十四代祖考高麗推忠協謀定難靖國功臣壁上三韓三重大匡僉議中贊世子師上洛郡開國公諡忠烈府君之墓有阡其藏其曆七百餘世爲此管理與結宗會時祭尊儀一不闕略每經三歲會長更拔令春宗議不肖見選茲涓吉辰就任敢告謹以酒果敬伸奠獻 尙 饗

飲水齋重建記念碑 謹堅 및 神道碑 里程標 豎立

7月 5日 飲水齋重建 獻誠記念碑謹堅 事業을 마쳤다. 記念碑의 規模는 와비가 가로 5尺, 세로 3.5尺, 두께 1尺이며 화강석 좌대는 지대석 1尺, 좌대석 높이 2尺, 폭 1.2尺으로 3단碑로 製作하였다. 神道碑 里程標는 지난 4월 會長就任 告由祭時 會長님께서 碑閣의 位置는 잘 잡아졌으나 지

나가는 사람들이 누구의 碑閣인지 지나면서도 알아볼 수 있게 里程標를 세우는 것이 좋겠다 하시어 따로 事業計劃을 세워 謹堅하라 하면 이중적인 일이 되어 記念碑工事와 병행함이 경비절감의 효과가 있어 3단 좌대에 5尺 높이로 하고 1.5尺 四面石에 三面에 大字로 高麗忠臣 忠烈公 金方慶 將軍神道碑라 刻字하여 神道碑閣 앞 道路邊에 세웠다. 이에 所要된 金額은 記念碑가 와비좌대 刻字費 運搬費를 다 하여 七百參拾九萬七仟원과 里程標가 刻字代 포함 壹百五拾萬원이드러 총 八百八拾九萬七仟원이 所要되었다.



會館補修로 面貌一新

2月23日 理事會議에서 2002年度 歲入歲出 豫算案審議를 거쳐 3月9日 總會에서 豫算案을 原案대로 承認決議를 받은 후 5개 業體로부터 見積을 받은 다음 4月 10日 會長團 會議를 開催하여 工事費 內容을 審議하고 會館補修工事を 하기로 決議하였다. 4月 18日 工事入札을 하기로 定하여 見積書提出 業體에 入札날짜를 通報한 다음 首席副會長 琮會 財政委員 洙栢 監事 永默 事務局長 命會 四人 이 會合을 갖고 工事內定價를 熟議하여 六千八百八拾萬圓으로 結定하고 入札에 들어갔다. 5個 業體中 1個 業體가 不參하고 4個 業體가 공개 入札에 應하여 휘미리 인테리어業體가 六千九百萬圓을 싸내어 內定價에 가장 近사치여서 內定價를 공개하고 휘미리 인테리어社가 落札이 되어 즉시 工事契約를 체결하였다. 4月 25日 會館移舍를 本 會館3층 하이리링코리아 會議室로 책상 2개와 간단한 집기만 옮기어 連絡事務만 할 수 있게 하고 書類 및 圖書들은 이사집센터에 約 2個月保管料 90萬圓과 運費費 2回 100萬圓 포함 190萬圓으로 移舍費用을 約定하여 移舍집을 옮기었다.

4月 26日 工事を 着手하여 內部철거 작업을 시작하였다. 5月 11日 組織委員 財政委員 監事會議를 갖고 工

事中間檢査를 實施하고 6月 6日 工事 監督委員인 組織 財政 監事會議를 召集하여 工事竣工檢査를 마치고 6月 11日 移舍집을 옮기고 移舍집을 整理하였는데 入住式 前日 6月 16日 씨이버宗親會 會員12名이 와서 圖書整理를 協力하였다. 이에 大宗會는 고마웁게 생각하는 바이다. 會館補修工事 契約外에 도시가스 설치비 246萬圓이 들었으며 大宗會看板을 鑄物로 製作하는데 45萬圓이 들었고 커텐 일습 50萬圓을 들여 깨끗이 단장하였다. 그밖에도 뒤 마당도 아스콘으로 깔아 會館內外部가 一新整備되었다. 새롭게 단장된 會館入住를 위하여 移舍집 정리를 서둘러 마치고 지난 6月 17日 顧問 會長團 理事 監事 任員 31名이 參席한 가운데 入住式을 舉行하였다. 儀式 절차는 먼저 中始祖 忠烈公 할 아버지 影幀을 모시고 간단한 祭物을 清潔히 陳設하고 琮會會長이 獻爵을 드리고 告由 祝文 奉讀을 마친 다음 다같이 大宗會의 萬世 繁榮을 祈願하는 마음으로 再拜하고 儀式을 마친 후 大宗會 看板게양 儀式을 한 다음 會長님의 간단한 人事에 이어 明會顧問 會長께서 激勵辭을 해 주셨다. 이어서 事務局長이 會館補修工事經過報告를 한 다음 準備된 茶菓와 飲料水를 마시며 情談을 나누고 下午2時頃 開館

會館入住式告由祝文

維 歲次壬午五月庚戌朔初七日丙辰二十四代孫琮會敢昭告于 顯二十四代祖考高麗推忠協謀定難靖國功臣壁上三韓三重大匡僉議中贊世

子師上洛郡開國公諡忠烈府君伏以 吾宗會館 遷移星霜風雨侵損今茲修補迺涓吉日 于茲入住日月神明惟時加護庶乎會館悠久永存百世雲仍行仁行義 益修報本 會宗盛儀 萬世繁昌 敢告虔告 謹以酒果敬伸奠獻 尚 饗



式 茶菓行事を 모두 마쳤다. 會館補修에 協贊해 주신분은 다음과 같다. 會長 壹百參拾萬圓과 電話(2217-3717) 電話機 2台를 寄贈해 주셨고 文英公宗會 會長 容大賢宗께서 壹百萬圓 首席副會長 按廉使公派宗會長 琮會賢宗 貳拾萬圓, 按廉使公派宗會 壹拾萬圓, 仁卿 貳拾萬圓, 在禪賢宗 五萬圓, 郡事公派 七井宗中 會長 在錫賢宗 壹拾萬圓, 翼元公派宗會에서 貳拾萬圓, 文溫公派 在熙理事 壹拾萬圓,

書雲觀正公派 在峻會長 五萬圓, 開城尹公派 昌植會長 五萬圓, 書雲觀正公派 寬浩顧問 五萬圓, 郡事公派 鴻洙理事 五萬圓, 前副會長 先會賢宗 參萬圓, 翼元公派 源會賢宗 五萬圓, 翼元公派 明會顧問 參萬圓, 翼元公派 榮俊理事 參萬圓, 翼元公派 在起理事 參萬圓, 提學公派 相蒙顧問 貳萬圓, 副使公派 圭章會長 貳萬圓, 無名 貳萬圓, 名譽會長 相祚賢宗 蘭盆 1點, 中浪藥局 거울 1點하여 現金이 參百六拾八萬圓이다.

白凡 金九 先生 第53週忌 追慕式

지난 6월 26일 서울 용산구 효창 공원 白凡 先生 墓所에서 政府要人 및 政界學界 社會團體의 많은 人事들이 參席한 가운데 第53週忌 追慕式을 奉行하였다.

式順에 따라 開式辭에 이어 國民 儀禮를 마치고 白凡 金九 先生에 對한 默念을 올리고 式辭에는 사단법인 白凡金九先生 기념사업회 회장이며 白凡 先生의 아들인 金信會長이 다음과 같이 式辭를 하였다.

式辭
민족의 절망과 오열 속에 가신 아버님의 영전에 삼가 泣告하옵니다.
많은 세월이 흘러 해와 달이 바뀌어도 아버님께서 우리 민족의 발전과 인류의 평화를 위해 남겨주신 이정표는 후손들의 가슴에 뚜렷이 남아, 아버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으로 살아나고 있습니다.
지금 인류는 정보화로 인하여, 전 세계가 한개의 지구촌이라 불릴만큼 가까워지고 국가간의 국경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구촌에는 민족간의 갈등과 전쟁이 끊임없이 무고한 생명을 앗아가기도 하고, 민족간의 증오는 전인류를 전쟁과 테러의 공포에 직면하게 하는 사태로까지 치닫고 있습니다.
아버님께서 일찍이 역설하셨던 바와 같이, 각 민족이 서로의 자주성과 자존성을 인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족간 화합과 공존공영을 추구했었

다면, 인류는 지금보다 더 평화롭고 안정되게 번영하였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많은 역경에도 불구하고 각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세계속에서 그 위상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온 국민이 극심한 곤란을 겪었던 수년전의 경제위기는 대부분 극복하고 새로운 경제적 도약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아버님께서 우리 민족이 분단이라는 비극 앞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에 “나는 우리나라의 청년남녀가 모두 과거의 조그맣고 좁다란 생각을 버리고, 우리 민족의 큰 사명에 눈을 떠서 제 마음을 닦고 제 힘을 기르기로 낙을 삼기를 바란다. 젊은 사람들이 모두 이 정신을 가지고 이 방향으로 힘을 쏟진대 30년이 못하여 우리 민족은 刮目相對하게 될 것을 나는 확신하는 바이다.”고 희망을 주신 은덕에 힘입어 우리는 눈부신 발전을 이룩하게 된 것입니다.
아버님께서 “내가 원하는 우리 민족의 사업은 결코 세계를 무력으로 정복하거나 경제력으로 지배하려는 것이 아니다. 오직 사랑의 문화, 평화의 문화로 우리 스스로 잘 살고 인류 전체가 의좋게, 즐겁게 살도록 하는 일을 하자는 것이다.”고 우리 민족이 참으로 잘 사는 길이 무엇인지를 제시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열리고 있는 체육과 문화의 축제인 월드컵에서는 인류가 서로의 기상을 드러내고, 화

합과 협력의 정신을 구현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세계적인 축제 속에서 우리의 젊은이들과 국민들은 단합된 힘과 질서의식으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세계만방에 사랑의 문화, 평화의 문화를 전파하여 전인류가 공존공영하는 문화를 만드는 과제를 주도할 수 있도록 아버님께서 지하에서나마 도와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버님!
아버님께서 항일 독립운동을 하실 때에는 일부 인사들은 날로 강해지는 일제를 보고 우리의 독립을 비관하였습니다. 또 아버님께서 통일정부 수립에 매진하실 때에는 국내의 많은 인사들은 미국과 소련에 의지하며, 아버님이 국제정세에 어두워 비현실적인 길을 간다고 매도하였습니다.
이에 아버님께서 “現實的이나 非現實的이나 문제가 아니라, 正道나 邪道냐가 생명이라는 것을 명기하여야 한다.”고 절규하시며 남북연석회의 참석을 결행하셨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이후 호전되었던 남북관계가 최근 답보상태에 있으나, 아버님의 말씀처럼 ‘통일은 민족의 지상명령’이므로, 우리 후손들은 통일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아버님!
3년전 정부의 지원과 아버님을 흠

모하는 동포, 후손들의 관심과 격려 속에 시작된 白凡紀念館이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기념관이 완공되면 아버님의 생애와 사상에 대한 연구, 각종자료의 수집과 전시를 통해,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통일국가 건설과 인류의 평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격려하는 도장이 될 것입니다.
孝昌園에 우뚝 설 기념관은 우리 민족이 나아갈 길을 제시해주는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후손들이 歷史의 正道를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님 곁에 살피 주시옵소서.
2002년 6월 26일
社團法人 白凡金九先生紀念事業協會 會長 金 信
이어서 追慕辭에는 李漢東 國務總理와 李文遠 獨立紀念館 館長이 하였으며 追慕歌는 3.1 女性同志會員들이 提唱하고 會長團, 遺族, 三府要人, 獨立運動 團體長 및 元老來賓順으로 獻花焚香으로 追慕式을 마치고 白凡紀念館을 觀覽하였는데 아직 工事が 마무리 단계 있으나 白凡先生의 遺物 坐像이 正門현관에 奉安되어 있었다.
竣工式은 올 가을에나 할 것이라 하는데 아직 날짜는 定하지 않았다 한다. 바라는 바는 올 가을 紀念館 竣工式에 많은 宗親들의 參詣를 바라는 바입니다.

안.사.연의 활발한 활동 소개

-기사 제공자 恒鏞
(제학과. 홈페이지 관리자)

우리 안동김씨 홈페이지(iandongki.com)의 인터넷상에서 서로 만나 개방적이고 동호인적 성격으로 조직된 안.사.연(안동김씨 사이버 학술 연구회. 2001.11.발기)에서는 지난 2월 학술 발표회 이후 알차고 유익하며 다양한 연속적 활동들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지난 3월 1일, 국경일을 맞아 안.사.연 회원 10명은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목왕리에 있는 익원공(휘 土衡) 재실(낙포재)과 묘소를 참배하고 이 일대의 주요 유적지(9정승 유적)를 답사하였다. 영환(문) 현종의 자세한 해설로 진행됐는데, 익원공께서 만드신 우리나라 최초의 세계지도인 <훈일강리역대국도지도>(우리 홈페이지에 소개)의 경이로운 공개가 있었고, 다산 정약용 묘소, 한확 묘소, 이준경 묘소, 한음 이덕형 신도비와 묘소 등도 답사하였다.

6월 16일과 23일, 일요일을 이용해 2일간에 걸쳐 안.사.연 회원 및 종친 약 10여명은 대중회 서고의 도서를 정리하는 행사를 가졌다. 대중회 창설 이후 서고에 보관돼 오던 각종 서적들이 정리돼 있지 않아 관리 및 열람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왔는데 금년 봄 대중회 사무실 보수공사가 완성됨에 때를 맞춰 실시됐다. 이 행사로 많은 우리의 문중 문헌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었고 이용에 큰 편리를 갖게 되었다. 안.사.연 회원들의 큰 노고가 있었지만 모든 문헌 자료 일람표는 우리 홈페이지 내의 자료실과 대중회 소개란에 게재한다고 한다. 정리된 문헌 총 목록은 족보류 63종 266권, 도서류 177종 236권, 문헌 복사류 24점, 기타 사진 및 유물류 약간 등이다. 이 외에 전국에 산

재해 있는 문중 선조님 관련 유적과 유물에 대한 일람표도 작성 중에 있는데 이를 위해 각 파종회로부터 자료 제출을 요망하고 있다고 한다.

이번 행사에 큰 노고가 있었던 종친 명단은 다음과 같다.(무순)

명희(익.사무국장), 손운순(대중회경리부장), 재철(안), 성희(안), 영환(문), 항용(제), 은희(익), 윤만(문), 태서(익), 태영(군), 태영(문), 주희(안), 발용(군)



앞으로 안.사.연에서는 여름 휴가를 맞아 7월 28일부터 30일까지 2박 3일간 <안동 총렬공 묘소참배 및 안동지역 역사탐방 대회>를 실시할 예정이다라 한다. 안.사.연 가족 약 40여명 정도가 참석할 예정인 이 행사는 능동의 음수재와 총렬공 묘소를 참배하고 인근 지역의 역사 탐방을 통하여 송조의식과 민족 문화와 역사 전통에 대한 깊은 애정과 전수의식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한다. 전액 자비 부담으로 이루어지는 이 행사는 안동 음수재와 의성 사천의 민취당에서 1박씩 숙박할 예정이며, 안동문화원장님(김준식)과 사천의 특출대중회 前부회장님(도)으로부터의 특별강연도 계획하고 있다 한다.(참가신청자는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011-892-5273으로 연락 요함).

栢谷 金得臣 先生 기념 백일장 및 학술 연구 발표회 성황리에 개최

기사제공자 恒鏞(제)

지난 5월 24일부터 5월 28일까지 충북 증평에서는 제학과파의 선조님 이신 시인 백곡 김득신 선생의 학문과 문학작업적을 재조명하고 신세대로 하여금 백곡 선생의 높은 문학적 전통을 기리고, 이를 이어받게 하는 행사가 열렸다. 24일에는 증평시민공원에서 충북 도내 초·중·고 학생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제7회 백곡 기념 백일장대회>가 열렸고, 28일에는 <백곡 김득신 선생 학술연구

발표회>가 증평출장소 대회의실에서 약 300여명이 모인 자리에서 성대하게 열렸다. 이 자리에서 이종복 교수(한국정신문화원)와 김영진교수(청주대 명예교수)는 “조선 실학문화에 있어서 김득신의 위상”이라는 주제하에 학술 발표를 하였고, <金得臣의 詩>라는 증평문화원에서 발간한 백곡시발췌 번역본 책자를 배부해 주기도 하였다. 이 자리에는 증평 인근지역에 사시는 우리 문중 종친들도 많이

참석하시어 자리를 크게 빛내 주었다.



5월 5일 어린이날에는 <범신라김씨 대중원>에서 주관한 경순대왕릉 추향대제(경기도 연천군 장남면 고랑포리 소재)에 참배하고 종묘를 답사하는 행사를 가졌다.

안.사.연 회원과 가족(11명) 및 제학과파 비안공 문중회(12명), 기타 원로 종친 여러분(15명) 등 총 38명이 참가하였는데 주관처에서는 버스 1대를 우리 문중에 배정해 주기도 하였다. 아침 8시에 서울을 출발하여 약 2시간 30분만에 능에 도착하였고 이어 신라 김씨 약 300여명이 모인 성대한 추향 대제에 경건한 마음과 자세로 참배하였다. 이동 도중 버스안에서 恒鏞(제) 종친의 사회로 상호 인사 소개가 있었고, 이어 柱會(안) 종친의 경순대왕과 관련한 자세한 안내 자료의 설명, 榮煥(문) 종친의 각종 보조 설명 등이 있었다. 또한 원로 연구가이신 在哲현중(안)께서 대안군의 묘지명과 대동보에 기술된 각종의 오류사항과 연구과제 등을 발표하셨다. 참배후 룡 아래 약 500m에 경주김씨 문중회에서 새로 마련한 대안군(휘 은열)의 영단에 참배하고 서울로 돌아와 종묘를 방문한 뒤 해산하였다.



川沙 金鍾德 先生 學術연구 발표회 성황리에 개최

기사제공자 恒鏞(제)

지난 4월 13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경북 대구의 경북대학교에서는 동방한문화회가 주최하는 춘계학술대회가 열렸다. 이 자리는 우리 문중의 빛나는 도평의공파의 선조님이신 川沙 金鍾德 先生의 文學과 思想을 재조명하는 행사였다. 입주의 여지없이 많은 참석자들이 운집한 가운데 열린 이 행사에는 많은 대학교수와 전문 연구인들, 그리고 대중회 창회 前 부회장님을 비롯한 경북 의성군 사천의 많은 도평의공파 종친들이 참석하

였다. 이 대회에서 이완재(영남대 철학과), 이동영(부산대 국문학과), 김시황(경북대 한문학과)교수와 김홍영씨(계명한문화회 회원) 등으로부터 조선 후기 영·정조 시대에 학문·교육에 전념하고, 여러 권의 문집과 서적을 펴냈으며, 조선후기 영남학맥을 계승시켜 오신 향토 유학자 천사 선생의 생애와 사상, 학문과 저술 등에 대한 깊고 다각적인 연구 발표가 있었는데 이 대회를 통해 천사선생의 높은 학업과 업적이 더욱 빛나는 계

기가 되었다.



알림 派宗會 地域宗親會長께 드립니다.

各 派宗會長님 그리고 地域宗親會長님 諸賢의 健勝하심을 仰祝하옵니다. 우리 大宗會가 發足한지 35년의 歲月이 흐르는 동안 꾸준히 닦아온 업적은 찬란한 빛을 내며 우리 安東 金門의 歷史를 創造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에는 우리 歷史가운데 가장 큰 忠烈公 齋室(飲水齋)重建事業을 이룩한 일은 이번 한일 월드컵경기의 團合된 國民의 熱情 못지 않은 全國 宗親들의 團合된 精誠으로 이루어 냈으며 올해는 大宗會 會館 補修工事を 近現代에 어울리는 補修를 하여 任員

會議만은 會館 會議室에서 할 수 있도록 모든 집기를 갖추었습니다. 이와같이 하나하나 再整頓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財政의 劣惡으로 常勤全擔部署를 갖추지 못하여 行政的 後進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모든 事務에서 一般事務는 賤하여 서도 할수 있으나 우리 宗門의 派宗會 및 地域宗親會에서 일고 있는 일들은 賤하여서 記錄할수가 없는 일이어서 바리움건데 派宗會나 地域宗親會의 動靜을 記事化하여 보내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 드리는 바입니다. 이는 宗

報의 資料인 동시에 宗會 움직임을 널리 弘報하며 宗會의 發展에 기여되고 沿革史의 根幹인 고로 좀 어려움이 있겠으나 行事가 있을 때에는 그때 그때 바로 그 現況 活動에 對한 內容과 모든 宗員의 專門分野別 參考할 만한 글 또는 孝行 善行等 우리 門中을 빛내고 사회에 모범이 되고 있는 宗親 그 밖에 詩, 紀行文 隨筆等의 多樣한 原稿를 보내주시면 感謝 하겠습니다.

2002年 7月 日
安東金氏大宗會報 編輯部 白

국회 공청회 법사위원 질의 요지

戶主制 廢止하는 民法改正을 反對한다.

우리 安東金氏大宗會는 政府가 推進하고 있는 民法改正案을 絶對 반대하며 韓民族總聯合會의 決議文을 전적으로 찬성하면서 國會公청회 법사위원 질의 요지와 推進인인 姓本宗中保護法 宗事法律案을 宗報에 掲載합니다.

국회 朴憲基 법사위원장 사회로 오전 10시42분부터 시작된 진술인 11명의 의견진술이 12시 51분까지 계속되었다.

법사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법사위원석에 배석하여 기히 배부된 공청회 자료집을 검토하고 관심있는 진술인의 진술내용은 진지하게 경청하였다.

특히 한국씨족 총연합회 具相鎭 부총재의 진술에는 진술인과 국회의원 방청석 모두 심각하게 청취하는 분위기였다.

11개 기관 단체 진술인의 의견진술을 마치고 12시 51분에 정회된 공청회는 오후 2시 56분에 속개되어 국회의원(법사위원)의 진술인에 대한 질의 답변이 시작되었다.

崔炳國 위원(울산 남구출신)질의요지

-張誠子 여성부 정책실장에 질의; 혼인은 남자와 여자가 같이 하는데 동성동본 금혼규정이 여성에게만 더 불리하다고 생각하며 피해를 보는지 설명바랍니다.

근친혼 금지에 있어 모계혈족의 모순된 표현에 대하여는 文章雲 법무심의관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咸承熙 위원 질의요지

-헌법이 규정한 성 평등의 도식적 원칙과 전통적 관습의 가정평화와 아동복지에 기여도를 감안한 법과 현실의 괴리는 없는것인지 張誠子 실장에 질의하고, 친양자제도를 도입했을 때 생부 쪽의 혈족단계는 단절되는 것이냐고 文章雲 심의관의 답변을 요구하자 그렇다고 답변했다.

咸 의원 - 친양자로 성이 바뀐 2세는 4촌이지만 법률상 혈족이 아니기 때문에 혼인할 수 있는나고 질의한바 文심의관은 그래도 자연적인 혈족관계는 있으니까... 운운하자 咸 의원은 계속 친양자 제도의 모순 점을 지적하고, 金鐸 교수에게 8촌이 넘으면 우생학적 문제가 없다는 통계에 대하여 질의하자 金 교수는 우리나라에는 그런 통계가 없고 외국통계라 답변했으며 咸 의원은 혼인제도를 잘못하여 후손에 미칠 영향에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서 咸 의원은 부부관계를 매사에 대립적 관계로만 보고 법률적 판단에 의지해도 가정평화에는 문제가 없느냐고 尹眞秀 교수에게 묻고, 친양자제 도입시 자녀의 혈통을 숨기고 성을 바꾸는 것이 국민정서에 맞는 것인지 우려되며 18세 기준연령의

근거는 무엇인지 李景淑 상임대표의 답변을 요구했다.

崔鎔熙 위원 질의요지

-鄭煥淡 교수에게 질의;동성동본 금혼제도는 80년대 법무부 전문위원 때부터 쟁점사항인데 저는 기본적으로 전통관습과 예절이 지켜지기를 바라는 입장이지만 최근 특례조치와 대법원 예규로 동성동본 혼인문제가 해결되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 결정과 다른 금혼제도 유지를 주장하는 실익이 있다고 보시는지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具相鎭 변호사에게 질의;재혼 금지 기간 문제는 DNA 기법으로 해결되고 있는데 여성만 6월에서 1년으로 연장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男,女 공히 1년으로 평등화 하면 간통죄를 쌍벌죄로 한 것처럼 여성차별 시비가 없을 것으로 보는데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바랍니다.

文章雲 심의관은 법무부 공청회에 제출된 의견중 개정안에 반영되지 못한 의견이 있었을 것인데 그 자료를 찾아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趙培淑 여성위원 질의 요지

-변호사로 재혼모의 자녀에 대한 가슴아픈 상담을 체험했는데 친양자법의 입법취지는 재혼가정 자녀문제가 아니고 기아문제의 기본방향이라 해도 현실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이혼 재혼가정이 자녀문제가 심각합니다. 헌법재판소 金時徹 연구관, 대법원 閔裕淑 연구관은 친양자제도를 민법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입양자 측진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자는 견해를 내셨는데 구체적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宋永吉 위원 질의 요지

-具相鎭 변호사에게 질의;가족의 혈통과 부계혈통도 중요하지만 부모가 가장으로 책임을 다할 때 성립되는 것인데 상당수 남성들이 씨만 뿌려놓고 양육에 무책임한 경우를 보면서 여성 착취에 분노한 경우도 있습니다.

具변호사는 "아이의 아버지는 법률상, 윤리상 모두 생부이고, 계부는 어머니의 남편에 불과할 뿐 그 아이의 부는 아니다"고 하였는데 여성이 재혼할 때는 자녀의 양육문제가 당연히 전제됨으로 친권을 가진 일방의 당사자가 재혼해서 동의했을 경우 친양자로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본다.

물론 친양자 후 재차 이혼과 아이가 생부를 찾는 경우도 있었으나 전향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이라 보는데 무책임한 생부의 성을 그대로 유지해야만 되는가?

"아이들을 교아로 수출하고 방치하면서 뭐가 잘났다고 혈통을 따지고 있는가에 대해 분노를 느낀다"며 헌신적인 양부모가 있다면 친아들과 같이 하도록 법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현실적인 다른 대안이 있

는지 듣고 싶습니다.

동성동본 금혼 문제도 이를 폐지한다고 국민에게 동성동본 혼인을 장려하는 것이 아니며 그것은 관습과 그때의 사회적인 가치 기준에 따라서 정의될 문제로 법으로 강제될 문제는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이미 효력이 상실된 법안을 국회가 개정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근거가 됩니까? 현재 결정으로 1999. 1. 1 효력이 상실된 조항을 국회가 개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국회가 헌법을 위반하고 있어야 한다는 주장인 것인지, 법적인 불일치 상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金容均 위원 질의 요지

-여러 공술인 진술에 감명 받았으나 특히 具相鎭 변호사의 분석과 의견 접근방법이 특이하고 논리가 정연한 것을 느꼈습니다. 동성동본 금혼제도 폐지의 부당성, 재혼금지기간에 대한 윤리적이고 사회규범적인 접근방법이 인상적이며 친생부인의 소, 친양자제도에 대한 문제 지적도 적절했으나 결론에서 완전히 부결하고 새로 연구해야 된다 보다는 구체적인 절충 대안이 제시되었더라면 좋지 않았겠나 보는데 具 변호사 생각은..?

趙舜衡 위원 질의 요지

-文章雲 심의관에 질의;정부의 민법중 개정안이 지난 15대 국회 종료로 폐기된 것을 이번 16대 국회에 그대로 제출한 것 같다.

정부는 1993년부터 1998년까지 5년간 "민법개정특별위원회"가 40여 차례의 회의로 개정안이 마련되었으나 그후 4년 동안에도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다.

1999년 3월 11일과 12일 국회공청회에서 여러 기관의 많은 의견이 제시되고 국회 법사위원회의 심사도 계속 했는데 이번 정부의 개정안은 그러한 의견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법무부는 중립적 입장에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고 하나 이렇게 몰가치적이고 법무부로서의 주관이나 의견이 없는 개정안은 잘못되었다.

정부는 우리헌법의 기본 이념이나 정신, 역사와 전통 관습의 수호도 생각해야 한다. 또한 친양자제도나 상속제도에 대하여도 광범위한 의견수렴과 세심한 검토가 없었다고 지적된다.

다음 李舜九 국사연구사의 同姓同本 不婚과 異姓不養 등의 역사적 고증에 감사하면서, 중국에서는 지금도 同姓同本 不婚의 관습이 지속되고 있는데 우리 관습이 중국에서 유래되었다 해도 조선시대 수백년 관습으로 정착되었으면 우리 관습으로 보아지기 때문에 더 상세히 설명해주시기 바란다.

金學元 위원 질의 요지

-鄭煥淡 교수, 具相鎭 변호사의 질의;동성동본 금혼 규정과 관련해서는 전면적으로 반대할 것이 아니라 현재 결정 등을 고려해서 현실성 있게 검토하여 토론의 접점을 찾도록 검토할 수 없는지? 특히 具相鎭 변호사의 구체적 설명을 바랍니다.

張誠子 실장에 질의;친양자 제도에 대하여 어느 나라라도 고유문화가 있는데 父의 성을 따르는 제도를 잘못이라는 표현은 어폐가 있는것 같다. 기타 친양자제도의 폐륜적 우려와 이혼과 재혼을 반복할 때 파생될 문제점에 대한 대안 등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친양자제도에 있어 정부안은 양친의 이익을 위한 파악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 같은데 재고할 필요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친생부인의 소의 원고 적격과 제척기간에 대하여 子의 원고적격사유 발생시 대비할 수 있는 구체적 대안은 鄭煥淡 교수에게 질의합니다.

또한 이혼 자녀의 성과 본, 호적변경을 유일하게 朴東涉 변호사가 긍정적 의견인 듯 한데 형제간에 양육자가 다를 경우 성과 본이 다르고 양육자가 변경될 때마다 성과 본이 수시로 변경되는 문제에 대하여 설명바랍니다.

千正培 위원 질의 요지

-張誠子 실장에 질의;친양자 대상을 7세까지는 본인도 부당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성불변의 원칙 등을 고려하면서 성장기의 심리적 타격과 혼인할 때의 가족끼리 성이 다른 문제점등에 여성부에서 좀더 실증적 연구로 조정할 수 없는지 설명바랍니다.

尹眞秀 교수에게 질의;친생부인의 소의 원고적격을 자녀에게 인정함은 옳다고 본다. 내가 아버지가 아닌 사람을 아버지가 아니라고 주장할 권리를 주어야 한다. 이에 대한 외국 학설등 보충자료와 설명을 바랍니다.

〈姓本宗中 保護法〉

宗事法律案 立法推進

한국씨족총연합회 가족법연구원 성안

(一)정부의 가족법 개악 저지와 함께 성본문중 보호법으로 종사법률 입법추진.

한국씨족총연합회는 국회에 계류된 민법중 개정법률안 처리를 위한 국회 법사위원회의 공청회에 참여하여 개악저지 의견을 개진하고 계속하여 국회의 처리과정을 예의 주시하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본건 국회 공청회 특집기사 내용과 같음)

(二)宗事法律案은 姓本門中 保護法이다.

1. 종사법안의 취지와 주요내용
종사법안은 부계혈통의 가족제도를 중심으로 하면서 모계의 권익도

최대한 보호하면서 세계 어느나라의 가족제도 규범보다 여성의 권익도 전향적으로 보장할 뿐 아니라 널리 친인척간에도 상부상조하는 화합을 촉진하여 전통적인 가족제도를 보존하는 내용을 골격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종사법안은

- (1) 姓,本 문화를 보호하고
- (2) 門中과 족보문화를 계승하며
- (3) 宗중의 재산을 보호하고 분쟁을 조종하는 종사위원회를 설치하고
- (4) 宗중의 협의기구를 법제화함으로써

성본 宗중의 안정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 입법추진

종사법안은 1999년 3월 11일 민법 개정예에 대한 국회 공청회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법안을 제출해 달라는 위촉을 하였다.

이에 한국씨족총연합회 가족법연구원에서 총 4장 18조와 부칙 3조로 된 종사법안을 성안하여 “종사법안 제안 이유서”와 함께 전국 성분종중 대표자 회의 결의를 거쳐서 1999년 7월 31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어서 한국씨족총연합회는 청원 입법과 의원입법을 동시 추진할 계획으로 종사법 입법 관철을 위한 1,000만명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적극적인 호응과 상당한 효과도 거두었으나 제 15대 국회가 회기말에 임하여 산적한 의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폐회되면서 민법 개정안과 함께 종사법안도 처리되지 못하였다.

종사법안은 민법중 가족법과 연관됨으로 한국 씨족총연합회는 정부와 국회의 가족법 처리과정을 예의 주시하면서 종사법안의 입법추진을 위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宗事法案

1999.7.31 국회에 제출

第1章 總則

第1條(目的) 이 법은 姓本과 宗中에 관한 傳統家族文化를 保護함으로써 民族文化를 繼承 暢達하는 데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正義) 이 법에서 사용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 1. “宗中”이라 함은 共同先祖의 奉祭祀와 墳墓守護 및 宗中員 相互間의 親睦圖謀 등을 目的으로 하는 그 宗中 始祖의 男系 後孫으로 構成된 自然的 血族集團을 말한다.
- 2. “姓本宗中”이라 함은 그 姓本의 始源이 된 이를 始祖로 하는 宗中을 말한다.
- 3. “族譜”라 함은 大同譜, 派譜 등 宗中員 全部 또는 一派의 親族關係를 網羅하여 體系의으로 나타내는 文書 其他 表現物을 말한다.
- 4. “宗事委員會”라 함은 이 법에 의한 宗事委員會를 말한다.
- 5. “韓國姓本宗中協會”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設立된 法人 韓國姓本宗中協會를 말한다.

第2章 姓本과 族譜

第3條(姓本의 登錄과 公用姓本의 制限)

- ① 姓本은 宗事委員會에 登錄하여야 하고, 宗事委員會에 登錄되지 아니한 姓本은 公簿에 記錄하지 못한다.
- ② 姓本登錄簿는 原本과 副本을 作成하여, 原本은 宗事委員會에 備置하고, 副本은 大法院이 이를 保存한다.
- ③ 姓本登錄에 관하여 이 법에 規定되지 아니한 事項은 戶籍法을 準用하되 그 施行에 관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法院規則으로 定한다.

第4條(姓本宗中の 姓本登錄) 1959년 12월 31일 以前에 通用된 姓本의 姓本宗中은 다음 各號의 資料를 갖추어 宗事委員會에 姓本을 登錄하여야 한다.

- 1. 姓本宗中の 規約
- 2. 姓本宗中の 代表者에 관한 資料
- 3. 繼代되는 姓本 始祖에 관한 資料
- 4. 族譜가 刊行된 경우에는 歷代 族譜
- 5. 族譜가 刊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宗中員을 特定할 수 있는 資料

第5條(姓本創設者等の 姓本登錄等)

1960년 1월 1일 以後 姓本을 創設하거나 歸化한 者 또는 그 姓本宗中은 宗事委員會에 다음 各號의 資料를 갖추어 姓本을 登錄하여야 한다.

- 1. 姓本을 創設한 경우 그 創設者와 姓本創設에 관한 資料
- 2. 歸化者로서 姓本을 使用하는 경우 그 歸化者와 姓本에 관한 資料
- 3. 姓本宗中이 整備된 경우 그 規約과 代表者에 관한 資料
- 4. 族譜가 刊行된 경우에는 歷代 族譜
- 5. 族譜가 刊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宗中員을 特定할 수 있는 資料

第6條(同一한 姓本의 整理)

① 血族이 아닌 姓本宗中の 姓本이 서로 同一한 때에는 宗事委員會의 仲裁에 의하여 本을 變更하거나 本에서 區別할 수 있는 標記를 追加할 수 있다.

② 이 법 施行 以後에 創設된 姓本이 既存의 姓本과 同一한 경우에는 宗事委員會의 仲裁判定이나 家庭法院의 判決에 의하여 後에 創設된 姓本을 變更하여야 한다.

③ 第1項, 第2項의 仲裁 또는 訴는 雙方 姓本宗中을 當事者로 하며, 訴提起에 앞서 宗事委員會의 仲裁를 거쳐야 한다.

④ 姓本宗中이 第1項, 第2項의 仲裁를 申請하거나 訴를 提起할 때에는 宗中總會의 議決을 거쳐야 하고, 仲裁申請이나 提訴를 받은 경우에는 宗中員에게 이를 告知하여야 한다.

第7條(姓本의 訂正)

① 戶籍에 記載된 姓本이 所屬 姓本宗中の 姓本이 아닌 경우, 그 戶籍의 戶主는 所屬 姓本宗中の 確認書와 正當한 族譜 또는 戶籍에 記載된 姓本의 姓本宗中の 確認書를 添附하여 姓本의 訂正을 申請하여야 한다.

② 第1項에 의하여 姓本을 訂正할 수 없는 경우 그 戶主는 戶籍에 記載된

姓本의 姓本宗中과 所屬 姓本宗中 雙方을 相對로 宗事委員會에 仲裁를 申請할 수 있고, 그 仲裁가 成立되지 아니하는 경우 家庭法院에 姓本確認을 請求할 수 있다.

③ 그 戶主가 第1項, 第2項의 仲裁申請이나 請求를 拒否하거나 懈怠하는 경우에는, 戶籍에 記載된 姓本의 姓本宗中 또는 所屬 姓本宗中은 나머지 兩者를 相對로 宗事委員會에 仲裁를 申請할 수 있고, 그 仲裁가 成立되지 아니하는 경우 家庭法院에 姓本確認을 請求할 수 있다.

④ 第2項, 第3項의 仲裁申請이나 訴에 있어서 訂正할 戶籍이 多數이고 그 原因이 同一한 경우에는 宗事委員會나 家庭法院의 許可를 받아 一活하여 仲裁申請이나 訴提起를 할 수 있다.

⑤ 第4項의 許可를 함에 있어서 宗事委員會나 家庭法院은 그 多數 戶籍의 戶主 全員을 實質의으로 代表하는 宗中代表者나 檢事로 하여금 그 多數 戶籍의 戶主 全員을 代理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代理人은 仲裁나 訴訟의 進行狀況을 遲滯없이 그 戶主 全員에게 告知하여야 한다.

第8條(支派宗中을 위한 姓本創設) 姓本 宗中이 民法 第781條의2 第5項에 의하여 支派宗中을 위한 姓本創設의 申請을 함에 있어서는 姓本宗中과 姓本이 創設될 支派宗中の 總會議決을 거쳐야 한다.

第9條(族譜分爭에 대한 仲裁) 姓本宗中 名義로 刊行된 族譜에 있어서, 記載된 親族關係에 重大한 흠이 있는 경우 利害關係있는 姓本宗中은 그 族譜의 刊行者를 相對로 宗事委員會에 仲裁를 申請할 수 있다.

第3章 宗中

第10條(姓本宗中과 代表者의 代行 等) ① 이 법 第2章의 訴나 仲裁申請에서 그 當事者가 될 姓本宗中이 韓國姓本宗中協會에 登錄되지 아니하거나 그 代表者가 確定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姓本宗中은 檢事가 代表하는 것으로 본다.

② 第1項의 경우 檢事는 지체없이 그 姓本宗中の 代表者를 確定하여 訴訟를 遂行하게 하여야 한다.

第11條(宗中社團法人과 宗中財團法人) ① 同一한 姓本宗中에 所屬된 一個 또는 數個 宗中이나 宗中의 一部分인 團體는 그 宗中 代表者가 定款을 정하고 宗事委員會의 認可를 받아 宗中社團法人으로 할 수 있다.

② 同一한 姓本宗中에 所屬된 一個 또는 數個 宗中の 宗中財產은 그 宗中 代表者가 定款을 정하고 宗事委員會의 認可를 받아 宗中財團法人으로 할 수 있다.

③ 第1項, 第2項의 法人의 定款 및 定款變更은 所屬 姓本宗中の 承認을 거쳐야 하고, 그 設立의 母體인 宗中과 關係를 斷絶하는 內容이 있는 경우 그 部分은 無效로 한다.

④ 第1項, 第2項의 法人은 宗事委員會에 登錄하고 그 監督을 받는다.

⑤ 宗中所有 不動產을 그 宗中이 設立한 宗中社團法人이나 宗中財團法人

으로 以前하는 登記에 관하여 取得稅는 全額 減免하고 登錄稅는 100분의 50을 減免한다.

第12條(宗中不動產의 登記)

① 宗中 所有 不動產이 未登記이거나 그 宗中 以外의 者 앞으로 名義信託되어 있어 그 宗中 앞으로 登記申請하는 경우에 이 법에 定하지 아니한 事項은 不動產所有權以前登記等에 관한 特別措置法(法律第4775호)을 適用한다. 다만 그 不動產에 관하여 訴訟繫屬 中이거나 確定裁判으로 因하여 登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法律 第4775號가 定하는 保證書는 그 宗中の 總會會議錄과 所屬 姓本宗中の 保證書로 한다.

③ 第2項의 會議錄에는 다음 各號의 事項이 明示되어야 한다.

1. 그 總會의 召集通知에 관한 事項

2. 그 不動產이 그 宗中の 所有임을 確定할 수 있는 根據資料와 이에 대한 討議內容

3. 名義信託의 境遇에는 名義受託者에게 그 總會의 召集通知를 한 史實과 名義受託者 中 그 總會에 參席한 者의 陳述內容

④ 宗中이 取得한 不動產 中 宗事委員會의 許可를 받은 것을 이 법에 의하여 그 宗中 앞으로 登記하는 경우에는 農地法 第6條, 第7條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⑤ 第1項의 登記에 관하여 取得稅는 全額 減免하고 登錄稅는 100분의 50을 減免한다.

第13條(宗中文化財의 指定 및 登錄)

① 文化體育部長官은 歷史的 意義와 文化的 價値를 가진 墳墓 기타 宗中 施設과 宗中儀式 其他 宗中文化를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宗中文化財로 指定할 수 있다.

② 宗中文化財에 관하여 이 법에 規定되지 아니한 事項은 文化財保護법을 準用하되 그 施行에 관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4章 宗事委員會

第14條(宗事委員會의 設置)

① 이 법에 의한 姓本이나 宗中法人에 관한 事務와 이 법이 定하는 仲裁를 爲하여 國務總理 所屬下에 宗事委員會를 둔다.

② 宗事委員會는 政府組織法 第2條(中央行政機關의 設置와 組織)의 規定에 의한 中央行政機關으로서 그 所管事務를 遂行한다.

第15條(宗事委員會의 所管事務) 宗事委員會의 所管事務는 다음 各號와 같다.

- 1. 姓本에 관한 事項
- 2. 宗中社團法人 또는 宗中財團法人에 관한 事項
- 3. 이 법에 의한 仲裁에 관한 事項
- 4. 其他 이 법에 의하여 宗事委員會의 所管으로 規定된 事項

第16條(宗事委員會의 構成 등)

① 宗事委員會는 委員長 1人 및 副委員長 1人을 包含한 9人의 委員으로 構成하며, 그 中 4人은 非常任委員으로

로 한다.

②宗事委員會의 常任委員과 非常任委員(以下 “任員”이라 한다)은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 중에서, 委員長과 副委員長은 國務總理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任命하고 기타 委員은 委員長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任命한다.

1. 姓本宗中の 代表者이거나 이던 者로 韓國姓本宗中協會가 推薦한 者
 2. 判事, 檢事 또는 辯護士의 職에 15년 以上 있던 者
 3. 大學이나 公認된 研究機關에서 關聯學科의 副教授 以上 또는 이에 相當하는 職에 15年 以上 있거나 있던 者로서 韓國姓本宗中協會가 推薦한 者
- ③委員長과 副委員長은 政務職으로 하고, 其他 常任委員은 1級 別定職 國家公務員으로 補한다.

第17條(宗事委員會의 仲裁)

①이 法에 의한 仲裁申請이 있는 경우 任員은 仲裁契約의 締結을 위한 調停을 한다.

②相當한 調停에도 불구하고 仲裁契約이 締結되지 아니하면 宗事委員會는 仲裁不成立을 決定한다.

③第1項에 의하여 仲裁契約이 締結된 경우 그 仲裁契約에 依據하여 仲裁하되 仲裁人은 任員 中에서 選定되어야 한다.

④宗事委員會의 仲裁에 關하여 이 法에 規定되지 아니한 事項은 仲裁法 第7條 乃至 第12條를 準用하고, 그 施行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 令으로 定한다.

第18條(韓國姓本宗中協會)

①이 法이 定하는 任務를 遂行하는 等 姓本宗中 共通의 課題를 解決하고, 姓本宗中 間의 和合을 통하여 民族의 安寧과 發展을 圖謀하기 위하여 韓國姓本宗中協會를 設立한다.

②姓本宗中은 韓國姓本宗中協會에 加

入할 수 있다.

③韓國姓本宗中協會는 法人으로 하고,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定款을 作成하여 國務總理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會則을 變更할 때에도 또한 같다.

附 則

第1條(施行日) 이 法은 2002년 1월 1일부터 施行한다. 다만 이 法의 施行을 準備하기 위한 行爲는 2001년 1월 1일부터 할 수 있다.

第2條(法 施行의 準備)

①韓國姓本宗中協會는 2001년 1월 31일까지 構成한다.

②宗事委員會는 2001년 2월 28일까지 構成한다.

③2001년 12월 31일 現在 戶籍에 記錄된 姓本의 姓本宗中이나 姓本創設者, 歸化者 等은 2001년 12월 31일까지 法 第4條 또는 第5條에 의하여 姓

本登錄을 하여야 한다.

④第2項에 의한 姓本登錄이 되지 아니하는 境遇에 對備하기 위하여 宗事委員會는 2001년 7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2001년 12월 31일 現在 戶籍에 記錄된 姓本 全部를 職權으로 臨時登錄하여야 하며, 大法院은 이에 必要한 資料를 提供하여야 한다.

⑤이 法 施行 前에 登錄된 社團法人이나 財團法人으로서 이 法 第12條의 法人과 그 實質이 같은 것은, 그 法人의 申請에 의하여 그 監督機關을 宗事委員會로 變更할 수 있고, 그 境遇 그 法人은 監督機關 變更日부터 이 法에 의하여 設立된 法人으로 본다.

第3條(有效期間의 變更)

法律 第4775호의 有效期間은 이 法 第16條에 의한 登記에 關하여는 200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飲水齋管理舍 기와 보수 및 전기 증압 工事 完了

지난해 飲水齋重建事業에 이어 管理舍 기와가 노후하여 빗물이 새어들어 불가피 補修치 않을 수 없어 工事費 壹仟貳百九拾萬원을 드려 한옥 기와로 교체하였으며 아울러 電氣用

量이 不足하여 재실난방시설의 위험이 커 증압공사비 參百萬원을 드려 安全하게 電氣 증압 공사도 완료하여 安全事故 對備를 철저히 하였다.



新任會長略歷

- 學 歷**
- 1966.8 高麗大學校經營大學院修了 [經營診斷士]
 - 1970.2 東國大學校行政大學院卒業 [行政學碩士]
 - 1973.5 서울大學校行政大學院修了 [國家發展課程]
 - 1998.8 美國 PRESTON大學校 [名譽經營學博士]

- 經 歷**
- 1942.3.20 京城府 臨時職員發令 [土木事業所勤務]
 - 1968.6.25 서울特別市內務局 人事課長
 - 1969.3.18 서울特別市 中區廳長 [副理事官]
 - 1970.7.10 서울特別市 永登浦區廳長
 - 1971.12.31 서울特別市 財務局長
 - 1972.10.18 서울特別市 內務局長
 - 1978.12.30 서울特別市 第1副市長
 - 1981.7.1 仁川直轄市長
 - 1985.2.28 山林廳長
 - 1991.6.29 民主平和統一諮問會議諮問委員委囑

- 1991.7.8 서울特別市議會議長當選
- 1997.11.11 大韓赤十字社 서울特別市支社 常任委員選任

兵 役
1956.6.30 陸軍少領豫編 [戰傷으로 名譽除隊]

- 賞 罰**
- 1954.3.25 金星花郎武功勳章 [陸1命令65號國防部長官]
 - 1954.4.20 金星花郎武功勳章 [陸1命令123號國防部長官]
 - 1956.5.1 功勞表彰狀 第2軍司令官
 - 1960.1.1 勉勵褒章 [第408號大統領]
 - 1963.5.7 功勞表彰狀[서울特別市長]
 - 1973.1.29 紅條勤政勳章 [第01283號大統領]
 - 1979.6.13 指揮官에 對한 1級功勞勳章 [세네갈共和國大統領]
 - 1986.9.10 黃條勤政勳章 [第360號大統領]

당선을 祝賀드립니다.

2002년 6월 13일 同時 지방선거에서 當選된 아래 宗親에게 安東김씨대종회 임원의 한마음 한뜻을 담아 축하드리며 국가와 우리 金門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 훌륭한 일을 하시기를 確信하는 바입니다.

- 鎮川郡守 按廉使公20代孫 金慶會
 - 永川市議員 文溫公21代孫 金泰玉
2002. 6. 14
安東金氏大宗會 會長 金璨會
安東金氏大宗會 任員一同

향전원에
代表 金在均
783-3166. 783-3167. 780-8477
FAX : 780-8478
자택 : 552-532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3-20 (프린스텔 1층1·2호)

韓國唯一의 綜合藝術의 殿堂

組版·印刷·製冊까지 唯一한 綜合工場

族譜 프로그래밍 自體開發 成功

本社 社屋 全景

族譜 出版의 元祖

回想社 6大 特徵

1. 創立 47年 歷史와 全國族譜 90%以上을 出版한 實績을 자랑하는 族譜界의 元祖
2. 컴퓨터로 迅速, 正確한 電子組版으로, 族譜 出版界의 一大革新
3. 春田體(漢文47,163字)開發 및 族譜프로그램으로 모든 僻字 完全解決
4. 編輯, 淨書, 出版, 印刷, 製冊등 모든 工程을 同一工場에서 一貫作業을 할 수 있는 全國 第一의 綜合工場.
5. 原稿에 誤謬가 있을시 組版前 即時 發見하는 30餘年間 勤續한 技能者 多數 確保.
6. 1,000餘坪 以上의 넓은 倉庫를 頌快完了때 까지 無料로 便宜提供.

*컴퓨터만 있으면 索引를 통하여 派, 世, 代를 檢索할 수 있는 CD를 製作하여 드립니다. (既 發刊된 族譜도 CD製作)

回想社 서울支社 移轉

서울地域에서 族譜編輯 및 出版을 推進中인 門中の 便宜를 爲하여 本社에서는 서울支社를 妥善하고 快適한 處으로 移轉하여 各 門中の 收單, 淨書, 編輯, 校正에 이르기까지 모든 便宜를 서울支社에서 提供코져 하오니 많은 聲援과 利用있으시기 바랍니다.

回想社 서울支社 略圖

*지하철 5호선 마포역 하차 4번 출입구로 나오셔서 마포대교 옆 강변한신코아 1412호 입니다.

族譜, 古書 出版, 製冊 **回想社**

본사: 大田廣域市 東區 中洞 47-4 電話(042)253-9881~3 Fax(042)253-9891
서울: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동 350번지 지사 강변 한신코아 오피스텔 1412호 전화(02) 718-9881 Fax(02) 718-9882

大宗會 部處 編制

지난 4월 10일 會長團會議에서 會長님께서 大宗會 會則七章第25條에 依한 業務分掌을 다음과 같이 指示하였다.

- 1. 事業局 事務局長 命會 經理部長 孫潤順
- 2. 組織部 首席副會長 琮會 委員 在澤 委員 相會 委員 容大
- 3. 事業部 事業部長 鶴應 委員 根成 委員 允會

- 4. 財政部 財政部長 在錫 委員 惠默 委員 洙栢 昌植 奉善 在峻
- 5. 管理部 管理部長 委 員 委 員 委 員 委 員 委 員 委 員
- 6. 編輯部 編輯部長 聲秀 委員 炳善 委 員 委 員 委 員 委 員
- 7. 會報校正委員 泰胃 滿吉 恒鏞

위와 같이 會長團에 各各 部署別 事務分擔을 配定하였다.

通常會費 納入者 名單

2002.1.~7.4까지

- 3만원 : 북회(提), 승회(典), 준(翼), 학응(提), 규호(提), 규식(翼), 상원(副), 회수(都), 동철(副), 태관(翼), 재호(翼), 영희(按), 종태(郡), 태헌(提), 장대(翼), 수길(翼), 태회(翼)
 - 2만5천원 : 남식(提)
 - 2만원 : 원선(翼), 옥남(郡), 효상(翼) 수회(翼), 선창(翼), 태철(提), 철호(提), 용환(提), 용신(翼), 원일(翼), 태식(翼) 재운(郡), 재준(郡), 태위(翼), 태헌(翼) 경중(翼), 태두(按), 명희(翼), 만천(翼) 상용(翼), 봉수(翼), 태은(按), 정준(翼) 철희(翼), 재원(文), 재찬(郡), 광묵(典) 병호(文), 희룡(郡), 선진(按), 원묵(安) 병수(翼), 홍희(典), 철호(書), 을순(翼) 노수(翼), 두회(按), 창성(翼), 찬식(都) 재일(翼), 북희(翼), 흥렬(提), 흥(都) 창식(副), 수일(正), 태호(按), 수용(提) 인묵(按), 인희(郡), 덕묵(密), 규현(提) 규태(書), 경찬(翼), 진창(翼), 현묵(按) 규영(提), 재하(按), 응묵(密), 태형(提) 재봉(翼), 달수(翼), 태회(翼), 도감(翼) 재화(按), 재화(翼), 정희(翼), 재왕(按) 재용(文), 용희(密), 효수(副), 재영(郡) 재수(郡), 삼용(郡), 영수(郡), 재근(郡) 태웅(郡), 태헌(按), 태승(按), 태용(按) 윤문식, 무명 1
 - 1만5천원 : 태인(安)
 - 1만원 : 광렬(文), 응득(翼), 순도(按), 재헌(典), 사진(按) 종년(末), 무명 1
- 계 : 2,240,000

재사중건기금 헌금자

- 郡 : 在哲(서울 강남) 3,000,000
 - 翼 : 閔漢(충남 논산) 500,000
 - 翼 : 泰麟(경북 영주) 300,000
 - 翼 : 文會(대전 동구) 300,000
 - 翼 : 在恒(충남 부여) 300,000
 - 郡 : 七井門中(경기문산) 200,000
 - 按 : 두회(충북 청주) 100,000
- 계 : 4,700,000

제35회 정기총회 회비

- 密直司使公派 : 泰倫
- 開城尹公派 : 相國, 昌植
- 郡事公派 : 有默, 在明, 용희 在學, 珪默, 在允, 재광, 在龍, 俊會, 재근, 용묵, 정묵, 在煥, 鴻洙, 聖默, 在錫, 在鉦, 경묵
- 典書公派 : 種大, 大敦, 용교 용우, 種文, 周植, 斗教, 재원, 根成 영교, 在烈, 聖會, 允會, 憲默, 육교, 재석, 재석, 재중, 인희, 재부, 재환
- 副使公派 : 규장
- 文溫公派 : 琮會, 泰榮, 재복, 영광
- 安靖公派 : 先浩
- 大護軍公派 : 景中
- 提學公派 : 상운, 宗會, 成鎬, 규보 昌會, 東年, 상몽, 相祺, 도응, 南應, 相國, 昌圭, 在基, 相淳, 奎馨, 鍾會, 寬華, 규성, 永默, 泰成, 泰憲, 상준, 容斗, 태욱, 규호, 相允, 기원, 泰燮, 태영, 復會, 양년, 鶴應, 萬應, 榮洙, 용규, 중식, 규복, 규현, 홍식, 용제
- 判三司公派 : 봉선
- 按廉使公派 : 思官, 昌會, 建會, 聖會 容辰, 洙萬, 진희, 우경, 동묵, 榮萬, 감묵, 在玠, 會潤, 在澤, 璇會, 在鴻, 仁默, 晟會, 禮默, 재정, 恩鎭, 태원, 聖會, 한수, 在弼, 泰亨, 在龍, 振應, 在成, 魯振, 千會, 昌會, 泰殷, 成會, 斗會, 성희, 재은, 泰元, 호식
- 翼元公派 : 현희, 귀식, 永壽, 光玉 太圭, 在玠, 泰胃, 용묵, 泰吉, 泰英 容世, 先會, 泰永, 在恒, 祥會, 文會 孝植, 宗會, 秉默, 哲會, 在河, 在起 榮俊, 한식, 柄教, 源會, 長會, 政桓 蓮植, 영희, 규희, 만교, 처희, 경수 吳植, 義默, 璨會, 容大
- 書雲觀正公派 : 圭冕, 在峻
- 正議公派 : 仁會, 範植, 洙鎭, 태응 總회비 173명 × 25,000 = 4,325,000원

우리 家門을 빛낸분 名單報告

지난 4월 10일 會長團會議에서 會長님께서 컴퓨터 홈페이지 만들기에 입력코져 安東金氏 家門을 빛낸 분 名單 提出 樣式을 配付하고 6월 30일 까지 各派에서 調査하여 提出해 줄것을 當付한 바이나, 한 件도 接受됨이 없어 다시 한번 이를 調査報告해 주실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安東金氏 家門을 빛낸 분 名單 (公派)

年度	派 (代世孫)	姓名	職名	略歷	빛낸 내용	備考

報告樣式 別表와 같음.

(職業)
 長官, 次官, 廳長, 市·道知事, 外交官 (大使級以上) (시장, 군수 민선으로 역임한분)
 國會議員, 法院, 判事, 檢査, 辯護士 等
 大學總長, 學長, 博士 等

大企業家, 經濟人團體長 等
 文人(小說家, 詩人, 隨筆家, 書家, 書 藝家 등 協會會員)
 孝子, 孝婦, 善行行爲로 勳褒賞을 받은 분 等 其他 이에 準한 家門을 빛낸 분

찬조금명단(2002년 정기총회시)

NO.	과별	이름	금액	비고
1	提	相祚	1,000,000	대총회장
2		密直司使公派宗會	100,000	
3		按廉使公派宗會	100,000	
4		翼元公派宗會	100,000	
5		書雲觀正公派宗會	100,000	
6		함평보성종친회	100,000	
7		괴산종친회	100,000	
8		고창중중	100,000	
9	文	琮會	100,000	서울시 마포구(파회장)
10	按	洙萬	100,000	서울시 관악구
11	按	聖會	100,000	서울시 관악구(부회장)
12	按	東默	100,000	충북 제천 단양지구 종친회장
13	翼	容大	100,000	서울시 성북구(문영공회장)
14	翼	璨會	100,000	서울시 관악구
15	翼	在河	100,000	강릉중중회장
16	翼	洙栢	100,000	서울시 송파구(익원공파회장)
17	正	泰浩	100,000	서울시 용산구
18	正	仁會	100,000	수원시 팔달구
19		提學公派宗會	50,000	
20	翼	孝昭公宗中	50,000	
21	郡	七井門中	50,000	과주 문산
22	典	憲默	50,000	서울시 성북구
23	文	榮煥	50,000	서울시 강남구(감사)
24	按	在成	50,000	충북 괴산
25	翼	在玠	50,000	경북 포항
26	翼	處會	50,000	서울시 관악구
27	翼	長會	50,000	경기도 용인 오산시
28	開	昌植	30,000	서울시 강남구
29	典	在烈	30,000	서울시 송파구
30	翼	先會	30,000	충남 부여(부회장)
31	翼	源會	30,000	경기도 김포
32	翼	容世	30,000	충남 당진
33	翼	永壽	30,000	경북 영주
34	翼	太圭	30,000	경북 삼주
35	翼	泰憲	30,000	충북 제천
36	提	容斗	20,000	충북 괴산
37	翼	祥會	20,000	충남 부여
合 計			3,430,000	

贊助者名單 (2002.1.10~7.4)

- 5만원 : 병권(典), 석찬(典), 재신(郡), 대용(郡), 무명 1
 - 3만원 : 윤희(翼), 병주(開), 병호(文), 운웅(郡), 흥희(翼), 종원(翼)
 - 2만원 : 인묵(按)
- 계 : 450,000

平生會費名單 (2002.1.1~7.4)

- 20만원 : 俊會(郡), 琮會(文), 洙栢(翼), 在英(密)
- 계 : 800,000

안.사.연 회원 찬조자

- 按 : 聖會(前副會長) 400,000
- 翼 : 銀會 101,000(夕食代)

정정

- 종보 75호 7쪽 하단 「재사중건 기금헌금자」 명단중 군사공파 泰永(전북김제)는 泰承(전북김제)의 잘못이고, 8쪽 13, 인림사공파 牧使公系金浦중중(경기 군포)는 (경기김포)로 14, 익원공파 청주 감혈현감 공과중중은 청주함열현감공과중중으로, 在哲, 在五, 奭會(충남 서산)은 在喆, 在五, 奭會로, 또 충렬공 재사 준공식 및 향사시 찬조금 명단중 郡, 醴川宗中은 郡 陽川宗中(서울 화곡)으로, 提 相煥(경기 이천)은 (충남 천안)으로 바로잡습니다.
- 종보 75호 1면 하단 「근하신년」 명단중 理事명단의 按兼使公派는 按廉使公派로 바로 잡습니다.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화 혼

前 副會長 昌會賢宗의 子婚을 祝賀드립니다.

부 음

前 按廉使公派 會長이시며 大宗會 顧問인 章會 賢宗께서 老患으로 別世 하였습니다.

前 大宗會 理事 海濱賢宗께서 老患으로 別世하셨습니다.